

세계 지식 재산 기구(WIPO) 개요

□ 개 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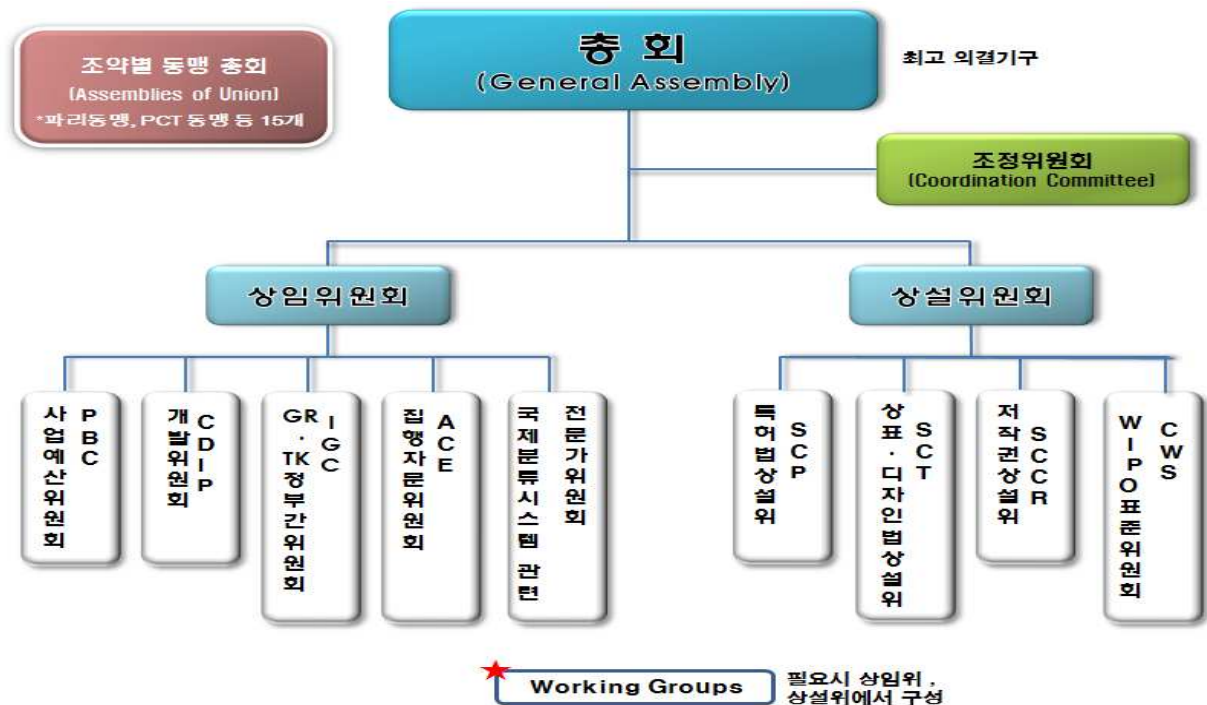
- (기능) 지식재산 분야 전문기구(UN 산하 16개 전문기구 중 하나)로서 국제 지재산 규범 형성 주도 및 지식재산 등록서비스 제공
- (회원국) 우리나라*, 미국, 일본, 중국, 독일, 프랑스 등 총 188개국
* 우리나라는 '79. 3. 가입(북한은 '74. 8. 가입)
- (연혁) 1967. 7. 14. WIPO 설립협약이 채택('70. 4. 26. 발효) 되었고, 1974. 12. 17. UN 전문기구 지정
- (관장조약) 총 26개(산업재산권 17개, 저작권 8개, WIPO 설립협약)
※ 우리나라는 총 20개(산업재산권 12개, 저작권 7개, WIPO설립협약) 가입
- (사무국) WIPO의 일반 사무업무를 관장하고, 제네바에 소재
※ 5개 지역사무소(일본, 브라질, 싱가포르, 중국, 러시아)를 운영중

□ 주요 기능

- 국제 지재산 규범 형성 및 관장(26개 국제조약 관장)
- 국제 지식재산 등록서비스 제공(지재산 중재·조정 서비스, PCT 국제출원 등)
- 지식재산의 활용 촉진 및 이해 증진(개도국 기술지원 및 역량개발)
- 정보 인프라 강화를 통해 국제 IP 시스템 효율화(국제분류 표준, DB 구축, 지재산 자동화 플랫폼 구축)
- 지재산 인식 제고 활동(대외 홍보, 지재산 집행, 지재산 분석)
- 개발을 위한 IP 활용 촉진(개발아젠다 조율 등)

□ 주요 의사결정 기구

- 총회(최고 의결기구), 조약별 동맹총회, 조정위원회(총회 자문기구) 및 상임위원회, 상설위원회에서 주요 의사 결정



- 총회(General Assembly) : 최고 의결기구

- (구성) 179개국*

* WIPO 회원국이면서 WIPO 관장 동맹의 회원국(파리동맹(174개국) 또는 베른동맹(165개국))인 국가

- (주요 기능) 사무총장 선출, 사무국 및 조정위원회 활동 검토.승인, WIPO 재정 및 각 동맹들에 공통되는 예산 편성.운영 등

- 조정위원회(Coordination Committee) : 총회 자문기구

- (구성) 우리나라 및 북한 포함 83개국*

* 파리동맹 또는 베른동맹 집행위 이사국(파리(42개국), 베른(40개국)), WIPO 설립협약에만 가입한 국가(2개국) 및 당연직 국가(1)로 구성

- (주요 기능) 고위직 인사(사무차장보 이상) 승인, 사무총장 단일후보 선정, 행정.재무.직원 및 WIPO 공동이해 사안 자문

o 조약별 동맹 총회(Assemblies of Union)

- (구성) 각 조약 가입국*(총 15개 조약)

※ 파리동맹, 베른동맹, 마드리드동맹, 헤이그동맹, NICE동맹, IPC동맹, 리스본동맹, 로카르노동맹, PCT동맹, 부다페스트동맹, 비엔나동맹, WIPO저작권 조약, WIPO 실연음반조약, 특허법조약, 싱가포르조약 가입국

- (주요 기능) 조약의 개정 승인

o 상설위원회(Standing Committees)

- 조약 제정 논의 등을 위해 총회의 결정으로 설립된 전문가 위원회

※ 상설위원회에서 조약채택을 위한 충분한 진전이 이뤄진 것으로 결정할 경우 총회에서 **외교회의**(신규 조약 체결을 위한 고위급 회의) 개최 여부 결정

- ① 특허법 상설위원회(SCP, Standing Committee on the Law of Patents,)
- ② 상표·디자인법 상설위원회(SCT, Standing Committee on the Law of Trademarks, Industrial Designs and Geographical Indications)
- ③ 저작권 상설위원회(SCCR, Standing Committee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)
- ④ WIPO 정보화 표준위원회(CWS, Committee on WIPO Standards)

o 상임위원회(Permanent Committees)

- 회원국 총회·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필요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

- ① 사업예산위원회(PBC, Program and Budget Committee) : 예산안 심의
- ② 개발위원회(CDIP, Committee on Development and Intellectual Property)
- ③ 유전자원·전통지식에 관한 정부간 위원회(IGC,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IP and Genetic Resources,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)
- ④ 집행자문위원회(ACE, Advisory Committee on Enforcement)
- ⑤ IPC 등 국제분류시스템의 개정을 위해 전문가위원회

o 실무그룹(Working Groups)

- 상설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특정 이슈를 상세하게 다루기 위해 설치하는 회의체(PCT 실무그룹 등)